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

(2016. 10. 2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9일(수)
- 제 출 자 : 이필레 의원 외 3명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0월 20일(목)

4. 관계법규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마포구민의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조례의 목적,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명칭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나.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신고 등 절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방범대연합회, 경비 지원 및 지도 감독(안 제8조 ~ 제10조)
- 마.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 지역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마포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同)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14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신고 등 절차에 대하여
안 제8조~제10조에서는 방범대 연합회의 경비 지원 및 지도 감독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동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 하였음

- 동(同)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차량유지비 외 기본적인 활동지원비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보상금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었으며, 현재 서울시, 강북구외 19개 자치구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근거를 강동구 외 5개 자치구는 방법초소 설치비 등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또한 우리 구도 자율방범대 업무를 자원봉사 활동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다만 방법초소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임
- 검토의견으로 동(同) 조례안은 2016.10.20.~10.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법제처 질의회신(법제처-11-0201, 2011.6.30) 결과 자율방범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7호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등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의무와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보고 차량유지비 등 기본적인 활동지원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방법초소 설치 지원에 대한 문제는 현재 방법 업무는 국가사무로써 상위법령이 제정된 이후 우리 구에서도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